

광주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나636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 피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김정웅

변 론 종 결 2023. 6. 30.

판 결 선 고 2023. 8. 11.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 8. 10. 선고 2022가단603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남 강진군 E 임야 35,569㎡ 중 35,741분의 3321 지분에 관하여, 소외 F와 피고 C 사이에 2020.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F에게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20. 8. 25. 접수 제8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전남 강진군 E 임야 35,569㎡ 중 35,741분의 23,987 지분에 관하여, F와 피고 D 사이에 2020.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F에게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20. 8. 25. 접수 제8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3행, 9행, 5면 각주2) 제1행의 각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7행 ‘수계하였다.’ 다음에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22. 8. 10. F의 승소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 2022나63651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6행의 ‘아무런 증거’를 ‘아무런 객관적 증거’로, 6면 마지막 행, 7면 1행의 ‘아무런 근거’를 ‘아무런 객관적 근거’로, 7면 2행, 3행의 ‘존재하는데 원고가 이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을 ‘존재하므로’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한상원, 판사 차유나

1) 항소장의 항소취지 등에 비추어 소장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